

세계적 기업 본부·연구개발센터 투자유치 본격화

- 헤드쿼터·R&D센터 인정제도 관련 외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4월 미주지역 유치활동에 이어 7월 유럽지역 투자유치 대표단 파견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 기업 본부(헤드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6. 12.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올 1. 9. 박근혜 대통령 주재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 이 활성화 방안은 고급인재, 첨단 경영기법 전파, 기술유입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의 헤드쿼터 또는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 소득세 감면, 조세절차 간소화, 출입국 편의확대 등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발표했음.
 - * 외국인 임직원에 일몰 제한 없이 동일 소득세율(현행 17%) 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용역 거래할 때 과세자료 제출 제외 대상 확대, 외국인투자 비자 체류한도의 5년 확대 등
 - * 일본이 '12.11월 「아시아거점화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주요국들도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유치경쟁에 돌입한 상황
- 시행령 개정안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매출액(3조 원 이상) 또는 산업 대표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글로벌기업으로 인정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해 총괄 지원·조정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고
- 헤드쿼터 업무수행 인력이 10인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함.
- (R&D센터) 석사 또는 3년 이상 연구경력 학사 5명 이상을 연구 인력으로 확보하고,
- 연구시설 신증설 투자규모 1억 원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이어야 함.

- 정부는 지원제도 마련과 함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임.
 - 올 4월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유치단을 미국에 파견한 데 이어 7월 중 산업부·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투자유치대표단을 독일·프랑스에 파견해 항공과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와 R&D센터 유치할 계획임.
 - 앞으로 투자유치 활동지역을 여타 미주·유럽 지역 등으로 확대해 글로벌 기업의 한국에 대한 헤드쿼터 및 R&D센터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임.
-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 이러한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진국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힘.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박달 사무관(☎ 044-203-40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1. 헤드쿼터 인정기준 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생략)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 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신설)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지역본부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1. 모기업이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할 것 가. 과거 5년간 평균 수출액이 3조원 이상인 기업 나. 선진시장 우량기업 지수, 세계시장점유율, 자산노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 2. 2개 이상의 해외법인 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것 가. 판매전략의 수립, 이행 및 영업활동 등의 수행 나. 생산계획의 수립 및 생산품목, 생산량 등의 조정 다. 원재료 등 조달계획의 수립, 조달거래처 선정 또는 물류기지 등의 운영 라. 인사권 행사 등 인사정책의 수립·조정

신·구조문대비표

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마. 연구개발 및 각종 기술 등의 지원 및 조정 바. 기타 기업 핵심 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 기능 3. 지역본부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일 것 4.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모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기업일 것
제14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 5.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자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④ 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개국 이상의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기업으로서 2개국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제20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④ 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조제8항에 따른 지역본부

2. R&D센터 인정기준 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생략)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 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신설)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① ~⑧ 생략 ⑨ <u>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시설이란 법제2조제1항제6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u> 1.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문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2.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 3.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비영리법인이 실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 넘는 것을 유할 것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

신 · 구조문대비표

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자지역을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에 해당하는 부분을 외국인투자자에 산업하지 아니한다. 1~3호(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나(생략)	에 해당하는 부분을 외국인투자자에 산업하지 아니한다. 1~3호(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제2조제9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나(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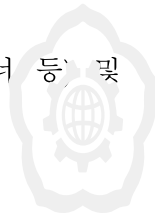
붙임2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등 유럽지역 투자유치활동 계획

1. 유치활동 개요

- ☐ (목적) 현지 유치활동을 통한 글로벌기업 HQ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
 -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글로벌기업 HQ·R&D센터 유치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1.9)에서 발표한 지원제도 구축의 성과를 구체화
 - (유망 프로젝트 구체화) 모기업 방문을 통해 유망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
- ☐ (일정) '14. 6.30(월) ~ 7.5(토)
- ☐ (장소) 독일, 벨기에, 프랑스
- ☐ (대표단) 산업부(무역투자실장 등), KOTRA(IK 커미셔너 등) 및 유관기관·기업

2. 주요 활동계획

- ☐ HQ·R&D센터 유치
 - (개별기업 면담) HQ·R&D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글로벌기업을 대상으로 CEO급 면담을 추진
 - (타겟분야 기업 간담회) 항공, 첨단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기술 분야의 유럽기업에 국내 투자환경을 설명하는 간담회 추진
 - * 13대 산업엔진분야 중 항공, 소재, 의료기기분야 등 고부가가치 분야
- ☐ 유망 투자프로젝트 유치 추진
 - 올해 투자검토 중인 유망 프로젝트 추진 기업과 면담을 통해 한국에 투자토록 독려·지원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